

2026학년도 세종캠퍼스 대학안전관리계획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나. 수립목적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전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다.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일반현황

학교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전 화	044-860-1114	FAX	044-860-1048	홈페이지	sejong.korea.ac.kr	
총장	김 동 원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양 지 운 (직책 : 세종부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기준: 2025년 대학정보공시 인원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6,714	957	7,671	

교직원 (명)	전임교원	사무직원	*현업업무직원	합계
	257	240	21	

※ 현업업무직원(21) : 조경, 미화,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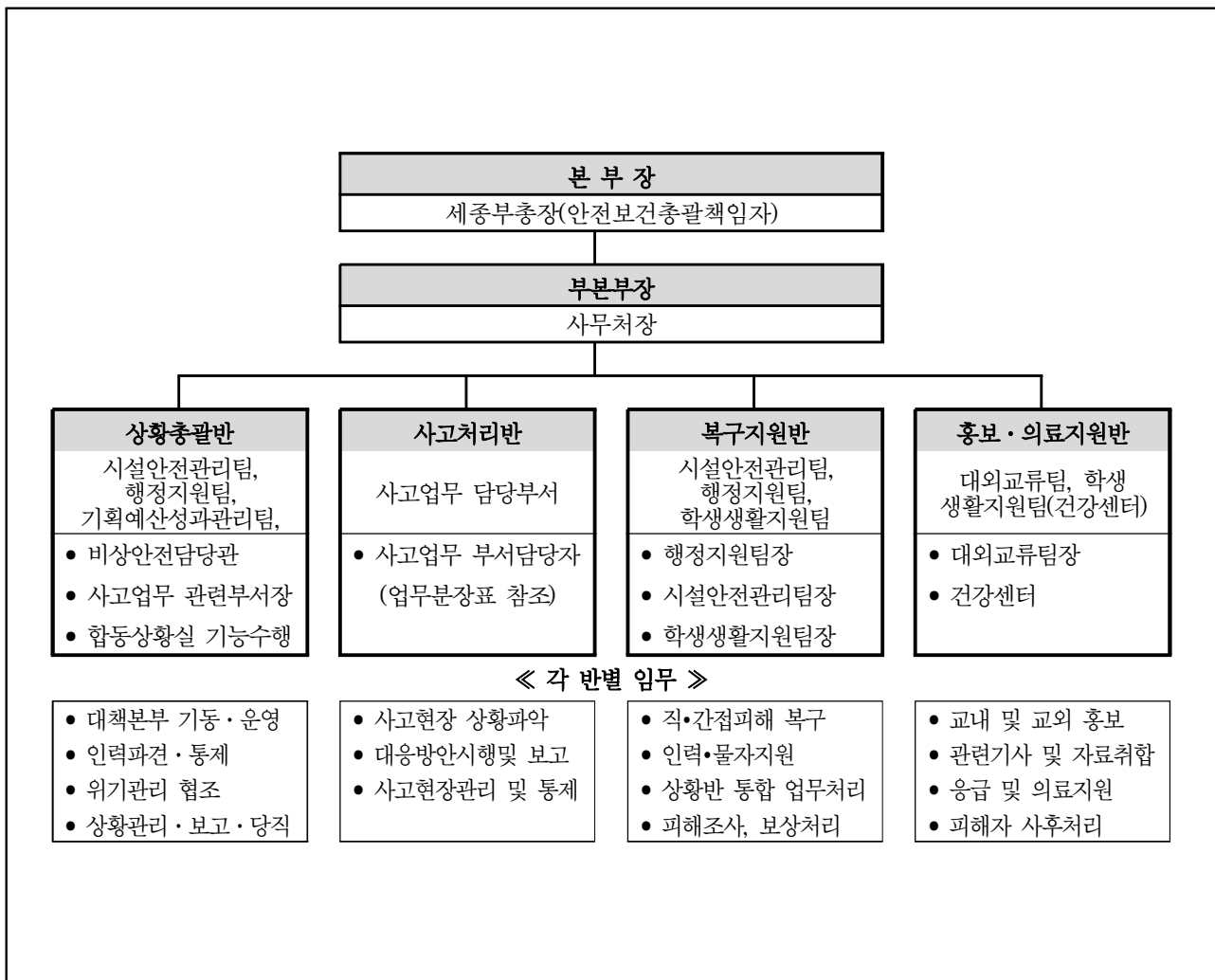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안전관리팀	관계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행정지원팀	시설안전관리팀
	사회재난	행정지원팀	시설안전관리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생활지원팀	단과대학 행정팀
	교육시설안전	시설안전관리팀	행정지원팀
	연구실 사고	시설안전관리팀	학생생활지원팀
3.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학생생활지원팀	행정지원팀
4. 범죄	일반범죄	행정지원팀	교무학사팀, 학생생활지원팀
	성범죄	세종인권·성평등센터	학생생활지원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설안전관리팀	행정지원팀, 학생생활지원팀
	중대재해처벌법	시설안전관리팀	행정지원팀, 학생생활지원팀
6. 기타	비상사태	세종병무행정팀	행정지원팀

□ 비상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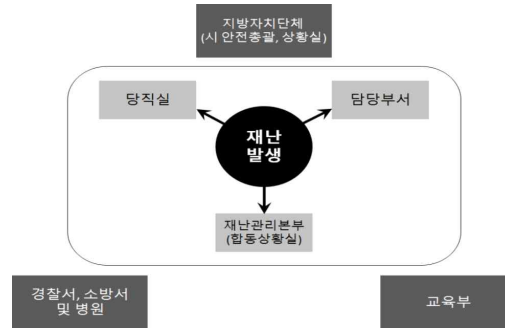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E-mail
세종부총장실	부총장	양지운	044-860-1002	jyang@korea.ac.kr
기획처	처장	김정기	044-860-1010	Jkfrancis@korea.ac.kr
교학처	처장	최보승	044-860-1020	cbskust@korea.ac.kr
입학홍보국제처	처장	김정학	044-860-1030	trustkjh@korea.ac.kr
사무처	처장	김영완	044-860-1040	ywankim@korea.ac.kr
연구산학처	처장	최두호	044-860-1700	doohochoi@korea.ac.kr
학생복지처	처장	이병희	044-860-1090	bhlee21@korea.ac.kr
기획예산성과관리팀	팀장	이병배	044-860-1011	lbbworld@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팀장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대외교류팀	팀장	이종무	044-860-1401	jmllee@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대학 내·외부간 비상연락망 구축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각 재난별 담당부서	전문경비업체 야간대응	재난관리본부 사태 악화 시 운영
---------------------------	-----------------------	-----------------------------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각 재난별 담당부서	합동상황실 주야대응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주야대응
조치원소방서(재난대응) Tel. 044-300-8119	세종시 재난관리과 Tel. 044-300-3211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Tel. 044-300-3251

II.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협조부서
차장	시설안전관리팀	박장호	044-860-1063, zzango@korea.ac.kr	
차장	시설안전관리팀	이상욱	044-860-1064, sangwlee@korea.ac.kr	
주임	시설안전관리팀	최순일	044-860-1066, nastashia2@korea.ac.kr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심지현	044-860-1065, jihys@korea.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 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 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기상청 통보문 및 자체조사 결과

- 기상청 통보문에 따라 충청권 평균풍속 10m/s 이상의 강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산학협력관 도보에 설치된 천막이 붕괴되면서 차량 파손됨.
-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설물 점검 및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종	044-860-1042, kyjong108@korea.ac.kr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협조부서
차장	시설안전관리팀	박장호	044-860-1063, zzango@korea.ac.kr	
차장	시설안전관리팀	이상욱	044-860-1064, sangwlee@korea.ac.kr	
주임	시설안전관리팀	최순일	044-860-1066, anastashia2@korea.ac.kr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심지현	044-860-1065, jihys@korea.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세종소방서 합동조사 결과
 -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복지매장 자체 안전관리자 선정 및 점검일지 작성, 세콤 보안장치 설치, 자체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조치 강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소방시설관리 및 점검	37,257	32,092	45,000	114,349	
재난 및 소방훈련	1,076	1,170	900	3,146	
건축물관리	493,350	519,300	495,700	1,508,350	
교육시설공제 가입	26,000	26,000	31,000	83,000	
계	557,683	578,562	572,600	1,708,845	

나. 안전사고

1.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부장 (팀장)	과학기술대학·과학대학원 행정팀	정원희	044-860-1301, weon@korea.ac.kr	협조부서
차장	약학대학행정팀	박연미	044-860-1602, iepym@korea.ac.kr	
차장	문화스포츠대학·문화 스포츠대학원행정팀	오승민	044-860-1203, nuno33@korea.ac.kr	
차장	글로벌비즈니스대학·창업 경영대학원행정팀	이윤정	044-860-1501, yjl@korea.ac.kr	
차장	공공정책대학행정팀	임병배	044-860-3801, rim215@korea.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대학생 집단연수 등 자치활동) 학생자치기구가 주관하는 행사, 집단연수(OT, M T 등) 중 발생 하는 안전사고로 교통수단, 숙박시설, 단체활동 등에 의한 사고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6	12	12	13	20	12.6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6	12	12	20	12.6
	계	6	12	12	20	

□ 원인분석

○ 자체 조사 결과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이용 증가로 보호장비 미착용, 과속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사전 안전교육 미흡
- 보행로 및 계단 구간에 대한 미끄럼 방지 조치 등 물리적 안전환경 조성에 일부 보완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응 단계에서 추진계획

○ (교내활동)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 단체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 지침을 정하여 학생 단체 활동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를 정함
- 승인권자는 행사 관련 정보,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 후 승인
- 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재해대처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행사 관련 계약업체나 서비스 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교외활동)

- 학생 단체 활동 사전 승인 절차 필수화 및 교직원 동행 의무화 시행 - 차량, 숙소, 단체 활동의 필수 항목(학생 단체 활동 자체 안전점검표 및 사전점검 결과서) 행사 전 제출로 점검 강화
- 행사 시작~종료(뒤풀이 포함)까지 행사장 주변 지역경찰서 합동 순찰 및 자체 순찰조 편성으로 안전한 캠퍼스 조성
-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 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보고 수준 결정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사고 검토
- 사고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시행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13,000	14,000	15,000	42,000	
계	13,000	14,000	15,000	42,000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차장	시설안전관리팀	박장호	044-860-1063, zzango@korea.ac.kr	
차장	시설안전관리팀	이상욱	044-860-1064, sangwlee@korea.ac.kr	
주임	시설안전관리팀	최순일	044-860-1066, anastashia2@korea.ac.kr	
주임	시설안전관리팀	김태훈	044-860-1070, thkim88@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해빙기·여름철·겨울철 등 취약시기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지속 실시 -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30,000㎡ 건축물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 용역 실시
- (주변시설) 학교에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 시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가 작성한 ‘안전성평가’를 검토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교육시설 안전인증	35,270	23,450	-	58,720	안전인증 대상건물수: 총 17개동 - 2024학년도: 10개동 - 2025학년도: 7개동
교육시설 안전점검	14,210	17,130	15,900	47,240	교육시설 안전점검 - 해빙기 (32개소) - 여름철 (32개소) - 겨울철 (32개소)
계	49,480	40,580	15,900	105,960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황진욱	044-860-1067, sosdbflqud@korea.ac.kr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김은영	044-860-1035, eykim@korea.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1	-	-	0.2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1	-	0.2
	계	-	-	1	-	0.2

□ 원인분석

○ 자체 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6,500	17,000	18,000	51,500	
일반/특수 건강검진	13,238	15,271	16,000	44,509	
계	29,738	33,271	34,000	97,009	

다. 감염병 예방관리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이효정	044-860-1038, kurbi77@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종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 위협요인

- 학교 내 법정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따른 체계적 위기관리
 - 법정감염병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 발생 및 지역·계층 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감염자 수	25	166	-	-	-	38.2
인명피해(사망)	-	-	-	-	-	-

☐ 원인분석

- 자체 조사 결과
 - 코로나 19 확산 시기에는 일시적 감염 발생, 초기 방역체계 운영의 과도기적 한계로 선제적 차단 미흡
 - 이후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정비 등으로 2023년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신종 감염병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 점검과 예방 중심 관리 강화는 보완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감염병 전파·확산을 방지
- 감염병(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 및 유행의심을 확인한 후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기존(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잠복기까지 추가(의심)환자 발생이 없을 때까지 감염병 담당자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7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진료·수검 후 검사 결과가 ‘음성’ 이면 등교(출근) 가능

* 자가검사 결과 ‘양성’ 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4판(23.8.31.)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자 격리기간 및 수칙 준수

- 확진자(학생 및 교직원)는 5일간 격리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6일 차 0시)까지 격리 권고

- 확진자(학생 및 교직원)는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 확진(본인 또는 동거인)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 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방역비	6,300	6,300	6,300	18,900	
계	6,300	6,300	6,300	18,900	

라.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부장 (팀장)	교무학사팀	이민철	044-860-1121, astro77@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교무학사팀	이민지	044-860-1122, dlalswl564@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등의 일반범죄 발생 사례는 없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범죄 예방·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무인경비시스템	598,000	607,000	508,200	1,713,200	
계	598,000	607,000	508,200	1,713,200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성평등센터	이수진	044-860-1527, soojinlee@korea.ac.kr	주관부서
부장	인권·성평등센터	정진만	044-860-1141, island90@korea.ac.kr	
직원	인권·성평등센터	이준경	044-860-5833, jk31221@korea.com	
직원	인권·성평등센터	전누림	044-860-5834, jeonnurim@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이효정	044-860-1038, kurbi77@korea.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 비밀 유지 사항에 따라 내용 비공개 처리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수	성희롱						
	성폭력						

□ 원인분석

○ 사건조사 보고서, 심리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 사건 내용들을 보면 가까운 사이에서의 성폭력이 주로 나타나며, 조사과정에서 ‘상대도 원한다’라는 오판과 성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식들이 많이 확인됨
- 매년 실시 중인 심리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그 빈도도 실제 사건 접수된 건과 큰 차이가 있는데, 주로 ‘참는 방식’의 대응이 나타나다보니 가해자들은 더욱 은밀하게 문제행동을 지속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 결국 그릇된 인식이 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
- 사건처리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예산 배정 등 제도적인 문제로 예방 교육, 사건 처리 등 교육 및 대응 강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일상 속 성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평등한 캠퍼스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 접수부터 상담-조사-심의-조치-사후관리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과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등 종합적인 안정망 확립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폭력예방교육	3,054	2,258	2,210	7,522	
고충상담원 교육	2,628	1,473	1,500	5,601	
사건처리(조사위원회, 법률자문)	8,285	8,619	10,100	27,004	
계	13,967	12,350	13,810	40,127	

마.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김은영	044-860-1035, eykim@korea.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 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애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 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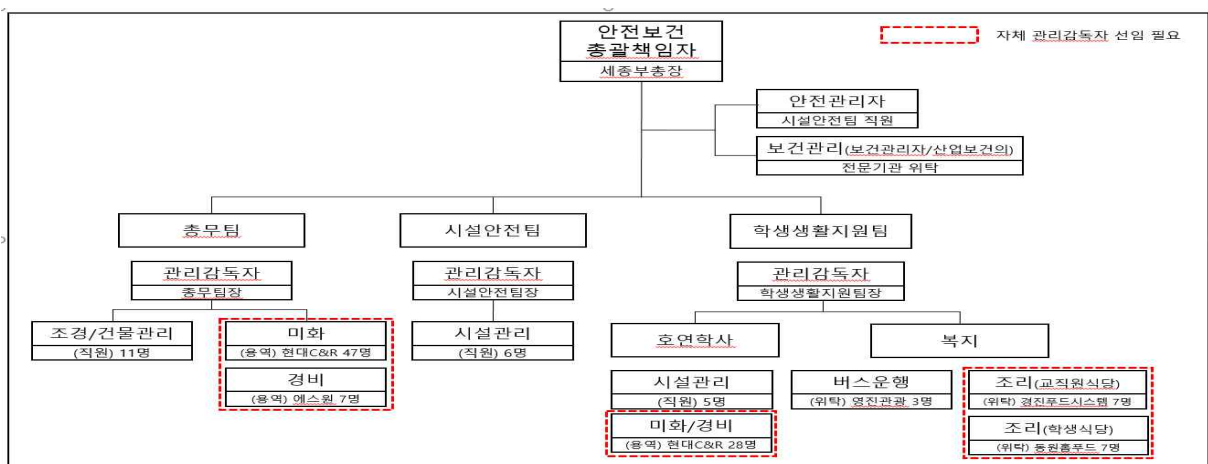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세종캠퍼스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 (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기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 (빨간색), ‘경계’ (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 (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 (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김은영	044-860-1035, eykim@korea.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

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설정한 교육부 안전·보건 경영방침* 현장 정착 및 홍보 강화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전 직원 및 모든 도급 근로자의 인식확대를 위해 X-배너 제작·배포, 홈페이지 상시 게시 등 기관별 홍보 추진

- 교육부소속기관·국립특수학교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보건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지속 실시
-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및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에 적극 노력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전 직종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여부 점검·확인 및 방문·컨설팅 강화(필요시 수시)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3)에 평가기준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평가·관리 실시

* 산재예방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보호구 구입 등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홈페이지, 온라인 상 건의함 외에 부서 단위의 수시·정기적 회의(TBM* 포함) 및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의견에 따라 필요시 개선 조치

* Tool Box Meeting(작업 전 간단한 교육 등)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조치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개선(시행령 제4조제8호)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배포, 재해 발생 시 활용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 지정 운영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

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구분하여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 (빨간색), ‘경계’ (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 (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 (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 · 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 · 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 · 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 · 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 · 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 · 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 · 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 · 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 · 절차 · 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 · 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보건관리위탁	6,098	6,098	6,098	18,294	
안전보건교육	624	830	1,530	2,984	
작업환경측정	1,310	990	2,000	4,300	
위험성평가	5,900	6,500	7,000	19,400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6,479	-	-	6,479	※ 건설중인자산에 포함
계	20,411	14,418	16,628	51,457	

바.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연대장 (팀장)	병무행정팀	박동철	044-860-1076, parkdc33@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병무행정팀	최윤덕	044-860-1077, yulia3@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교육훈련비	400	400	400	1,200	
계	400	400	400	1,200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가.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나.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4.06.12 2025.06.12	-	-	13,491	-	-	-	-	치료비 담보 신입생 O/T 담보
2025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5.06.12 2026.06.12	-	-	14,000	-	-	-	-	치료비 담보 신입생 O/T 담보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300,000	1,000,000	피공제자(대학 총장)의 제3자(학생 포함)에 대한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대물	-	100,000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1,000		학생 상해 치료비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2,000		신입생 OT치료비

다.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 · 폭발 · 붕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교육시설 공제사업	2025.01.01. 2025.12.31.	24,837	165,581	26,104	-		-		
2026	교육시설 공제사업	2026.01.01. 2026.12.31.	30,252	165,341	31,517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대인/대물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화재 (법정금액)	대인	150,000	-	
		대물	-	1,000,000	
	시설소유/ 관리자	대인	300,000	300,000	
		대물	-	1,000,000	

라.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연구실 안전공제	2024.06.01 2025.05.31	3.891	3,665	14,261	1	775.7	-	-	
2025	연구실 안전공제	2025.06.01 2026.05.31	4	3,728	13,340	1	203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	
장해급여	200,000	-	
요양급여	2,000,000	-	
입원급여	50(1일)	-	
장의비	10,000	-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10,000	-	※ 단, 대학(원)생에 한함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가.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김진모	044-860-1069, wlsah7942@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훈련횟수)	인원	예산(천원)
소방훈련·교육(본교)	2025.11.19.(수)	1시간	54명	204
소방훈련·교육(오송)	2025.11.28.(금)	1시간	62명	272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 훈련·교육	■ 무각본 훈련 영상 시청 ■ 화재·재난 발생시 대비 대피 시뮬레이션, 소방차 진입로 점검 ■ 소방공무원의 지도교육 및 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훈련 ■ 심폐소생술, 심장 제세동기 교육 및 실습 실시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소방훈련(본교)	연 1회	각 2시간	전 구성원	400,000원
소방훈련(오송)	연 1회	각 2시간	전 구성원	2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 훈련·교육	- 화재·재난 발생시 대비 무각본 소방 대피훈련 실시 - 소방공무원의 지도교육 및 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훈련 - 심폐소생술, 심장 제세동기 교육 및 실습 실시

나.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김진모	044-860-1069, wlsah7942@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이효정	044-860-1038, kurbi77@kore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입생 새로배움터 안전 교육	교내 공지	1회 (필요에 따라)	신입생 전 구성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입생 새로배움터 안전 교육	▪ 행사 전 인권, 음주 안전, 성폭력 예방교육 ▪ 행사간 안전관리팀 운영 및 규찰, 인원통제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행사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예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집단연수 및 교내행사 시 안전성 확보 교육	- 교외 연수 진행 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다.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김은영	044-860-1035, eykim@kore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형태	교육시간	인원	예산
현업근로자	집합교육	반기별 6시간	21명	142,400원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연간 16시간	3명	624,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현업 근로자	반기별 1회	각 12시간	21명	해당 없음
관리감독자	연간 1회	연간 16시간	3명	624,000원
안전관리자	격년 1회	34시간	1명	30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

라.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황진욱	044-860-1067, sosdbflqud@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교무학사팀	최지영	044-860-1125, jy0317@korea.ac.kr	협조부서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 안전교육	1학기, 2학기	각 1회	총 1,255명	월 135,750원
정기 안전교육	1학기, 2학기	각 1회	총 5,704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1학기, 2학기	각 1회	약 1,200명	월 150,000원
정기교육훈련	1학기, 2학기	각 1회	약 6,000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마.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이효정	044-860-1038, kurbi77@korea.ac.kr	
부처장 (부장)	행정지원팀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행정지원팀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 정	횟수	인원	예산
각종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내 공지	수시	전구성원	-
각종 감염병 예방 수칙	교내 공지 및 문자 발송	수시	전구성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각종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 행동 요령 ■ 감염자 발생 시 동선 안내 및 방역 실시 ※ 학사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예정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 정	횟수	인원	예산
각종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내 공지	수시	전구성원	-
각종 감염병 예방 수칙	교내 공지 및 문자 발송	수시	전구성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각종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 행동 요령 ■ 감염자 발생 시 동선 안내 및 방역 실시 ※ 학사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예정

바.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성평등센터	이수진	044-860-1527, soojinlee@korea.ac.kr	주관부서
부장	인권·성평등센터	정진만	044-860-1141, island90@korea.ac.kr	
직원	인권·성평등센터	이준경	044-860-5833, jk31221@korea.com	
직원	인권·성평등센터	전누림	044-860-5834, jeonnurim@korea.ac.kr	
부장 (팀장)	학생생활지원팀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학생생활지원팀	이효정	044-860-1038, kurbi77@kore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전교생	2025.03.10.~2026.02.22.	4시간	4,946명	-
교직원	2025.03.10.~2026.02.22.	4시간	722명	-
전임교원	2025.06.26.	2시간	53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인권과 성평등교육 (LMS 온라인교육)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등
고위직 별도교육	·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횟수	인원	예산
전교생 (온라인)	2026.03. ~ 2027.02.	상시	7,671명	-
교직원 (온라인)	2026.03. ~ 2027.02.	상시	943명	-
학생(졸업예정자)	2026.07. / 2027.01.	총 2회	-	-
전임교원	2026.06. (예정)	연 1회	60명	-
재학생 (대면)	2026.10. (예정)	연 1회	5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인권과 성평등교육 (LMS 온라인교육)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등
고위직 별도교육	·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등)
대상별 맞춤교육	·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및 신종범죄 등)

사.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위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연대장 (팀장)	병무행정팀	박동철	044-860-1076, parkdc33@korea.ac.kr	주관부서
직원	병무행정팀	최윤덕	044-860-1077, yulia3@korea.ac.kr	
부장 (팀장)	시설안전관리팀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협조부서
직원	시설안전관리팀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5.08.20	20분	50	400,000(원)
교직원	25.08.20	5시간 30분	13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 훈련	대피소 이동, 갓길 주차, 학생 대피, 라디오 시청으로 상황파악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비상대비훈련	년1회	학생	400,000(원)
교직원	비상대비훈련	년1회	교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 훈련	대피소 이동, 갓길 주차, 학생대피, 라디오 시청으로 상황파악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가.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

나.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1. 재난, 안전사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등

☐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	-----	----

	전 화 번 호	e-mail	
세종시 소방본부	044-300-3119	-	대응예방과
조치원소방서	044-300-8119	-	재난대응과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44-300-5119	-	행정안전부
중앙119구조본부	041-635-5511	-	충정·강원 특수구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042-388-5600	-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42-485-0019	-	대전광역시본부
한국전력공사	061-345-4341		안전보건처 재난관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044-995-3010	-	응급의료센터
세종시 보건소	044-301-2000	-	

☐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44-860-1061 044-860-1041 044-860-1031	-	시설안전관리팀 행정지원팀 학생생활지원팀

2. 감염병 확산

☐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질병관리청	1339	-	감염병 전문콜센터
세종시 보건소	044-301-2000	-	코로나 19 핫라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	1800-3114	-	진료예약센터

☐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감염병 발생 비상 대응체계	044-860-1031 044-860-1041 044-860-1061	-	학생생활지원팀 행정지원팀 시설안전관리팀

3. 범죄

☐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법무부 스마일센터	042-526-1295	djsmile1295@hanmail.net	대전스마일센터
대전지방검찰청	1301	-	
세종북부경찰서	182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42-472-1295	-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042-280-8436	-	대전해바라기센터

☐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4-860-1041 044-860-1031	-	행정지원팀 학생상담센터

4. 비상사태

☐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제32 보병사단	042-824-6114	-	대표전화
세종시 경비단	044-862-2972	-	대표전화
세종시청	044-300-6500	-	시민안전실
세종소방소	044-300-8119	-	대표전화
세종경찰서	044-330-0324	-	대표전화
조치원읍대	044-864-1114	-	읍대사무실
홍익대세종캠퍼스	044-860-2575	-	예비군연대

☐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42-824-6114	-	제32보병사단
	044-862-2972	-	세종시 경비단
	044-860-1076	-	고려대 세종캠퍼스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나.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다.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라.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안전보건경영방침****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안전보건경영방침**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교육 활동 전반에 안전과 보건을 법인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한다.

가.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교육사업 및 경영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나.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라.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마.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법인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붙임2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담당 부서	직위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주관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부장 (팀장)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협조부서
		시설안전관리팀	차장	박장호 044-860-1063, zzango@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차장	이상욱 044-860-1064, sangwlee@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최순일 044-860-1066, anastashia2@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심지현 044-860-1065, jihys@korea.ac.kr	
	② 사회 재난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주관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부장 (팀장)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협조부서
		시설안전관리팀	차장	박장호 044-860-1063, zzango@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차장	이상욱 044-860-1064, sangwlee@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최순일 044-860-1066, anastashia2@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심지현 044-860-1065, jihys@korea.ac.kr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주관부서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과학기술대학·융합 과학대학원행정팀	부장 (팀장)	정원희 044-860-1301, weon@korea.ac.kr	협조부서
		약학대학행정팀	차장	박연미 044-860-1602, eiepym@korea.ac.kr	
		문화스포츠대학·문화스포츠대학원행정팀	차장	오승민 044-860-1203, nuno33@korea.ac.kr	
		글로벌비즈니스대학·창업경영대학원행정팀	차장	이윤정 044-860-1501, yjl@korea.ac.kr	
		공공정책대학 행정팀	차장	임병배 044-860-3801, rim215@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부장 (팀장)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시설안전관리팀	차장	박장호 044-860-1061, zzango@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차장	이상욱 044-860-1063, sangwlee@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최순일 044-860-1066, anastashia2@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김태훈 044-860-1070, thkim88@korea.ac.kr	

위험유형	담당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③ 연구실 사고	시설안전관리팀	부장 (팀장)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황진욱 044-860-1067, sosdbflqud@korea.ac.kr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협조부서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김은영 044-860-1035, eykim@korea.ac.kr	
3. 감염병 예방 관리	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주관부서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이효정 044-860-1038, kurbi77@korea.ac.kr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4. 범죄	① 일반 범죄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주관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교무학사팀	부장 (팀장)	이민철 044-860-1121, astro77@korea.ac.kr	협조부서
		교무학사팀	직원	이민지 044-860-1122, dlalswl564@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오경주 044-860-1947, ohkj123@korea.ac.kr	
	② 성범죄	인권·성평등센터	센터장	이수진 044-860-1527, soojinlee@korea.ac.kr	주관부서
		인권·성평등센터	부장	정진만 044-860-1141, island90@korea.ac.kr	
		인권·성평등센터	직원	이준경 044-860-5833, jk31221@korea.com	
		인권·성평등센터	직원	전누림 044-860-5834, jeonnurim@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협조부서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이효정 044-860-1038, kurbi77@korea.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시설안전관리팀	부장 (팀장)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위험유형	담당 부서	직위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직원	김은영	044-860-1035, eykim@korea.ac.kr	
	② 중대 재해	시설안전관리팀 부장 (팀장)	강태상	044-860-1061, kangts@kore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박윤제	044-860-1068, dbswp309@korea.ac.kr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팀장)	홍석경	044-860-1031, erichong@korea.ac.kr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김은영	044-860-1035, eykim@korea.ac.kr	
6. 기타	① 비상 사태	병무행정팀 연대장 (팀장)	박동철	044-860-1076, parkdc33@korea.ac.kr	주관부서
		병무행정팀 직원	최윤덕	044-860-1077, yulia3@korea.ac.kr	
		행정지원팀 부처장 (부장)	이창호	044-860-1041, changho@korea.ac.kr	협조부서
		행정지원팀 직원	김윤중	044-860-1042, kyjong1108@korea.ac.kr	

붙임3

위험요일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발생건수	6	12	12	13	12.6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6	12	12	12.6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	1	-	0.2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1	-	0.2
3. 감염병 예방관리	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감염자 수	25	166	-	-	38.2
		인명피해(사망)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피해자 수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성희롱	1	2	1	1.5
			성폭력	1	1	3	1
			계	2	3	4	2.75
		피해자 수	성희롱	1	2	1	1.5
			성폭력	1	1	3	1
			계	2	3	4	2.7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재산피해(천원)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붙임4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천원)				비고
			2024	2025	2026	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소방시설관리 및 점검	37,257	32,092	45,000	114,349	
		합동소방훈련	1,076	1,170	900	3,146	
	② 사회재난	건축물유지관리	493,350	519,300	495,700	1,508,350	
		교육시설공제 가입	26,000	26,000	31,000	83,000	
		계	557,683	578,562	572,600	1,708,845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13,000	14,000	15,000	42,000	
		계	13,000	14,000	15,000	42,00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인증	35,270	23,450	-	58,720	
		교육시설 안전점검	14,210	17,130	15,900	47,240	
		계	49,480	40,580	15,900	105,960	
	③ 연구실 사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6,500	17,000	18,000	51,500	
		일반/특수 건강검진	13,238	15,271	16,000	44,509	
		계	29,738	33,271	34,000	97,009	
3. 감염병 예방 관리	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방역비	6,300	6,300	6,300	18,900	
		계	6,300	6,300	6,300	18,900	
4. 범죄	① 일반범죄	무인경비시스템	598,000	607,000	508,200	1,713,200	
		계	598,000	607,000	508,200	1,713,200	
	② 성범죄	폭력예방교육	3,054	2,258	2,210	7,522	
		고충상담원 교육	2,628	1,473	1,500	5,601	
		사건처리(조사위원회, 법률자문)	8,285	8,619	10,100	27,004	
		계	13,967	12,350	13,810	40,127	
5. 산업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보건관리위탁	6,098	6,098	6,098	18,294	
		안전보건교육	624	830	1,530	2,984	
		작업환경측정	1,310	990	2,000	4,300	
	② 중대 재해	위험성평가	5,900	6,500	7,000	19,400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6,479	-	-	6,479	
		계	20,411	14,418	16,628	51,457	
6. 기타	① 비상 사태	교육훈련비	400	400	400	1,200	
		계	400	400	400	1,200	